

의안번호	2216255
의 퇴 인	안도걸 의원
회 답 일	2026.2.6.
추계번호	26E0344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비과세)	○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－ (추가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27에 따른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감면 [참고사항] 위 법률안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제91조의27을 신설하여 국민투자형 국민성장집합투자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려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안도걸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21625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함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(비과세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27에 따른 저축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으로, 농어촌특별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27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계좌를 통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(국민성장펀드)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, 개정안의 의결 전제 법률안인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16254호)에 포함되어 있음
 - －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과세특례는 투자금액에 비례한 소득공제 혜택과 펀드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로 구성됨

[표 1]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내용

구 분		과세특례	
요건		- ①,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용저축계좌를 통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투자형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 ① 납입 한도가 1명당 2억원 이하일 것 ②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할 것	
과 세 특 례	소득공제	- 펀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아래 표의 공제액 적용	
		1명당 투자금액	공제액
		3천만원 이하	투자금액의 100분의 40
		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1,200만원 + (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		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	1,600만원 + (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)
		7천만원 초과	1,800만원
	배당소득 분리과세	- 투자일부터 5년 이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9%의 세율로 분리과세	
기타		- 투자일부터 3년 전 펀드 양도·환매 시 세제혜택 받은 세액 상당액 등 추정	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투자금에 따른 소득공제액 규모,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객관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

-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중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상품구조를 확정·발표하고, 6월 전후 일반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·판매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